

# 한국성서대학교 헌장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 목 차

제1장 총 칙	-----	1
제2장 교육과정	-----	1
제3장 교육여건	-----	3
제4장 학사관리	-----	3
제5장 대학운영	-----	4
제6장 후생복지	-----	6
제7장 장·단기 발전계획	-----	6
제8장 보 칙	-----	7

##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①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기독교가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및 유물주의적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보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연구하고, 가르쳐 복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초교파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본 대학교는 성서가 가르치는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심오한 진리와 그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가르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심어주어 국가 사회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구자로 즉 땅에 떨어져 썩어 새로운 싹을 내는 한 알의 밀과 같은 역군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가진 성서적 신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생활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한 희생적 개척자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과 봉사적 실천 생활을 통하여 생동하는 관계를 갖게 한다.

②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봉사에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한다.

③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원한 소망의 비전을 갖게 한다.

④ 성서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를 양성한다.

⑤ 성서적인 근본주의 신학에 견고히 서서 모든 이단적인 사이비 기독교 학설에 미혹되거나 타협함이 없이 성서 중심의 보수신앙을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순수한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역군들을 양성한다.

⑥ 특정한 사람이나 교파나 교단이나 재물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⑦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손색이 없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⑧ 주어진 직장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이 봉사하는 사역자를 양성한다.

⑨ 성서에 입각한 진리로 무장하고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역경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겨레를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봉사함으로 조국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척자를 양성한다.

⑩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 인류에게 평화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하는 소명받은 한 알의 밀을 양성하는 것이 본교의 목표이다.(제정 52. 5. 13)

## 제2장 교육과정

**제3조(특성화 방안)** 대학교육의 큰 기능은 국가사회에 기여할 인력의 양성과 제 학문분야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교는 설립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인재 양성과 그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천적 교과과정의 철저, 기초학문분야의 집중 육성, 다국적 선교전략을 위한 연구, 교수 및 학습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들에 본 대학교가 한국교회 및 사회, 더 나아가 세계 사회 및 교외에 이론과 실재가 조화를 이룬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① 실천적 교과과정의 철저를 위해 모든 학생은 매일의 일상 학업 이외에 다음과 같은 끊임없는 신앙 훈련을 받는다.

1. 신입생 개척자 훈련 - 모든 신입생은 1학년 1학기과 2학기 초에 각 1주일간씩 포천 본교 조림실습장에서 합숙하며 식목 등 육체노동을 통해 개척자로서의 땀과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2. 매일 Chapel - 전교생은 매일 Chapel에 참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적 신앙인으로 훈련된다.

3. 수요전도 - 전교생은 매주 수요일 서민들의 삶의 현장, 즉 병원 · 빈민굴 · 사창가 · 시장바닥 등을 찾아 지역사회와 직접 접촉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내성(耐性)훈련을 받는다.
  4. 학기 초 부흥 사경회 - 매 학기 초 부흥 사경회를 열어 긴 방학 동안 흩어졌던 모습을 가다듬고 새 학기를 여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한다.
  5. 방학과제 · 전도보고서 - 방학 중 전교생은 매일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도록 도전받는다.
  6. 금주 · 금연 · 금무 - 전교생과 전교직원은 청교도적인 생활이 요구된다.
- ② 기초학문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리를 깊이 있게 모색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어학, 그리고 세계화 속에 놓여진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외국어를 실용적으로 구사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추진한다.
1. 2학년 1학기에 전공선택 -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전공 선택은 2학년 1학기에 하도록 하여 학문의 내용과 자신의 적성을 가늠할 시간을 허용한다.
  2. 레벨(Level)제 영어 교수 - 학년차의 영어교수 방식을 지양, 각 학생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찾게 되며, 4년 동안 자신의 수준 향상으로 영어의 실질적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3. 계정 강좌 - 어학과 교양과목 등의 계절강좌를 개성하여 학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③ 다국적 선교전략으로 선교지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외선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제4조(개설학과, 학부의 발전방안)** 본 대학교에는 신학부와 인문사회학부, 정보과학부를 둔다. 신학부에는 성서학 전공(주간 · 야간), 선교학 전공(주간 · 야간)을 두고, 인문사회학부에는 사회복지학 전공(주간 · 야간), 영유아보육학 전공(주간)을 두고 정보과학부에는 인터넷정보학 전공(주간)을 설치 운영한다. 각 전공별 교육목적, 특징 및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3. 1)

① 신학부

1. 성서학 전공

성서학 전공은 본교의 초석과 같은 분야이다. 따라서 성서학 전공자에게는 장학금의 배분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긍지를 갖게 한다.

교육목적 및 특성 :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교수 연구하여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초교파적 지도자를 양성, 복음주의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성서원어, 신학 및 신학관련 학문과 실천적 교과과정에 중점을 두어 본교의 이념을 몸에 익혀서 평생토록 실천하게 한다.

2. 선교학 전공

교육목적 및 특성 :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개척자적인 전도인을 양성하고, 아직도 독립 학문 분야로서는 초기단계에 있는 선교학을 연구, 체계화하여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북한 및 공산권 선교와 아랍권 선교의 실제와 이론, 이상과 현실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소양을 기르게 한다.

② 인문사회학부

1. 사회복지학 전공

교육목적 및 특성 : 개인, 가정, 소집단 및 사회 저변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사회사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응용된 기술을 다루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회사업가를 양성한다. 졸업 시 문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영 · 유아보육학 전공

교육목적 및 특성 : 현대 사회가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영 · 유아기의 아동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한 바른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본 전공은 영 · 유아기 아동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연구와 성서 안에서의 바르고 효율적인 인성 교육을 접목하여, 발달기의 영 · 유아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살필 보육교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③ 정보과학부

1. 인터넷정보학 전공

교육목적 및 특성 : 정보화 시대라고 일컫는 21세기에 기술발전의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통신학은 컴퓨터 통신의 개선방법과 이를 토대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정보의 유용성 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분야이다. 우리 대학의 정보통신학 전공은 기독교적 신앙을 근본으로 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졸업시 공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제5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과 특성화 방안 및 각 전공별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운영한다.

##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수 확보)** ①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에 학문적 능력과 기독교적인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우수인력을 교수 요원으로 채용한다.

②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겸임교수제, 외국인 교수, 기금교수제 등 특수 신분 교수제를 도입 시행한다.

**제7조(시설설비 확보)** ①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② 시청각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과 어학실습실, 컴퓨터실습실 등을 연차 계획에 의하여 설치, 확보한다.

**제8조(기타시설 확보)** ① 교육과 연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학생회관, 강당 등을 확보하고 연차계획에 의하여 전자계산소, 출판부 등과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높은 수준의 연구 능력 함양을 통해 본교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연구활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소를 설치 운영한다.

③ 전임교육과 복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역군 양성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간 만남의 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대화공간 등 별도의 시설을 확보한다.

##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① 본 대학교의 신·편입생 선발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전형 선발고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매 학년도 입학요강으로 정한다.

**제10조(학사정원관리)** ① 학생 정원은 본 대학교의 수용 능력과 필요인력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생 정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편·입학, 재입학, 전과를 허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학칙과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1조(학기)** 본 대학교의 학기는 매년 2학기로 운영하며, 그 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제12조(대학간 학술교류 등)** ① 교수와 학생들의 교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간의 학술교류, 교수 및 학생의 교환제도, 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적극 도모하며 본 대학

의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학점인정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장 대학운영

###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교직원의 채용기준)** ① 본 대학교의 교수채용기준은 교내규정에 의하되 해당 모집분야에 합당한 자격을 소진한 자로서 연구와 강의, 신앙과 사상,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 등을 갖춘 자를 채용한다.

② 일반직원은 신앙과 사명의식을 가진 해당업무 및 행정처리능력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채용절차)** ① 교수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임용자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임명은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일반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15조(교수평가)** 교수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종합평가제 방안을 시행한다.

① 본 대학교의 교수평가는 교육, 연구 및 봉사역량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를 통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교수평가항목(개정 2003. 6. 1)

1. 신앙영역

· 신앙훈련 참여도(FT, 밀알훈련), 전도반 지도실적, 예배참석

2. 교육영역

· 강의평가, 학생지도

3. 연구영역

· 학문적 기여도, 연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도

4. 봉사영역

· 학교홍보에 대한 기여도, 사회공헌, 학교운영참여

③ 교수평가는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평가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한다.

**제16조(교수의 질제고를 위한 계획)** 교수의 연구력 향상 및 교수의 질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① 교수연수계획

1. 교수방법 개발을 위한 Program을 운영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Workshop 등의 형태를 통한 연수를 갖는다.

2. 연구 학기제를 시행하여 국내외 연구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학술행사 참가지원

국제 수준급 학술지의 논문 투고료, 국내외 학회 출장경비, 그리고 국내학회, 심포지움 및 초청강연회

주최경비 등을 보조한다.

③ 연구 활성화 계획

1. 교수종합평가제가 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 연구비지원 해외연수 및 해외파견활동 우선지원 등 우수교수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 교수 연구년제를 실시하여 교수가 강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과 관련지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장학생제도를 도입하여 교수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2절 재 정

**제17조(재정확보방안)** ①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등록금 수입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이상으로 확보한다.

- ② 각종기부금 및 대학발전기금 모금운동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한다.
- ③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자원확보를 유지한다.

**제18조(발전기금모금계획)** ①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대상자를 교직원, 동문, 교회, 학부모, 지역인사, 자치단체, 주요기업체 및 단체 등을 통해 발전기금 조성운동을 전개한다.

- ② 발전기금은 현금,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도서, 기자재등 본교의 목적사업에 유용한 일체의 출연형태로 한다.
- ③ 모금된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며 출연자는 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1. 교수의 학술연구비 지급 및 교수해외파견, 해외저명 교수초빙,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의 국제학술 교류사업과 각종연구기자재 구입
  2. 학생장학금의 지급범위 확대
  3. 도서관의 장서 및 정기간행물의 구입
  4. 기타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
  5. 출연자의 희망에 따른 용도

**제19조(재정공개)** ① 예산의 합리적 수립 및 적법한 집행을 위해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한다.

- ② 제1항의 공개는 일간신문, 교계신문 또는 이에 준하는 신문을 통해 한다.
- ③ 본교 전 구성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 공개한다.

**제20조(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재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실적을 반기별로 감사에게 보고한다.

- ② 감사가 심의한 반기별 재정운영결과는 예산 목적에 따라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또는 대학발전기금 모금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1조(법인의 수익용재산 확보 계획 및 관리)** 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정하는 가액 이상을 확보한다.

- ② 수익용 기본재산은 운영수익 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을 수 있는 자선으로 확보하되 투자의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다양화 한다.
- ③ 법인의 수익용 재산 운영 및 관리는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 따라 운영한다.

## 제6장 후생복지

**제22조(학생장학금)** ① 학생들의 학업향상과 면학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등록금 재원과 재단장학금, 기부금, 발전기금, 각종 외부장학금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② 매학기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 봉사, 근로, 교역자 자녀, 보훈, 입학정적우수,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③ 모자가장, 소년소녀 등 생활보호 대상자인 신입생에게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중 1/2을 학교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본인이 근로 등을 통해 4년간 나누어 부담한다.

**제23조(학생자치기구 지원)** ① 학생회 활동은 본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지도 육성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학교는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최대한 지원한다.

②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경비로 충당한다.

③ 총학생회와 각종 전도팀 및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회는 적절한 지도 방법 등을 마련한다.

**제24조(학생기숙사)** 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기숙사를 설치 운영한다.

② 수용인원은 학생 정원의 1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며 장차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③ 각종 편의시설 및 여가활동 시설을 구비하여 학교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제25조(교직원 복지)** ① 교원들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직원들이 이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근무 환경, 후생복지 시설 및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되 그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26조(학생진로 지도 및 취업대책)** 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들에게 자신의 소명과 특성에 적합한 직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진학지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보다 적절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② 지도교수제를 두어 교수들로 하여금 지도 대상 학생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당면문제, 관심사 및 진로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하게 한다.

③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국내외의 자매학교 등에 진학 및 유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④ 목회활동과 선교활동, 기독교 관련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이루어 본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확대 보장할 수 있게 한다.

## 제7장 장·단기 발전계획

**제27조(장·단기 발전계획)** 본교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한다.

① 교육

전공 및 교양교육의 내실을 추구하고 교육구조의 개편을 통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대학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성적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② 교수 및 연구

우수교수를 계획 유치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수종합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교수에게 혜택을 제



공하며 교육 및 연구여건, 복지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교수처우를 개선한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교수의 수업부담을 경감시켜 연구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당 책임 시수를 하향 조정해 나간다.

③ 사회봉사 및 대외 협력체제

교수와 학생들이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봉사 행정체제를 구축하며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교류뿐 아니라 공동연구 세미나 등 연구협력체제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한다.

④ 학생장학 및 복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면학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장학제도를 개선하고 장학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가하며 우수 신입생 장학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동창회, 대학발전기금, 교회를 통한 기금조성을 추진한다.

⑤ 교육 및 연구 지원체제

학술정보 획득능력 강화를 통하여 고수의 연구지원 기능을 개선하고 행정의 자동화와 전산화로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도서관의 기능 중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술정보센터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정규모의 PC실을 설치, 운영하고 어학실습실을 설치하여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실용적 외국어의 습득기회를 제공한다.

⑥ 시설 및 기자재

교육기본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등을 증·보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 방법의 다양화, 교육매체의 개발 등으로 시청각교육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청각교육 기자재를 확충한다.

⑦ 행정 및 재정

대학행정의 구조와 관리방식 및 교직원의 의식을 개혁하고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과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대학 본연의 연구활성 및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달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근검절약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지출의 합리화를 기하고 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발전기금조성을 활성화하여 대학 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제8장 보 칙

**제28조(대학헌장의 보완)** 이 대학 헌장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누가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9조(공표일)** 이 헌장은 1997년 3월 1일 공표한다.